2016년도 자체평가계획

2016. 4.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6년도 자체평가계획

2016. 4

국토교통부

목 차

Ⅰ. 2015년 자체평가 결과 ····· 1

Ⅱ. 2016년 자체평가 개요 ····· 2

Ⅲ. 성과평가위원회 및 평가지원팀 구성·운영 ····· 5

Ⅳ. 자체평가 대상 ····· 11

Ⅴ.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 ····· 13

Ⅵ. 평가방법 및 일정 ····· 15

Ⅶ. 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 ····· 20

Ⅷ. 기타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 21

【붙임 1】 주요정책과제 평가지표 ····· 22

Ⅰ 2015년도 자체평가 결과

1. 2015년 자체평가 결과

□1 **(경 과)** 성과관리 시행계획 및 자체평가계획 작성('15.4월) ⇒ 난이도 평가('15.5월) ⇒ 상반기 노력도 평가('15.7월) ⇒ 최종평가('16.1월)

○ 민간위원 32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7개 전문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평가 후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

* 소위별 주요정책현장 방문(분기) 및 정책자료 제공(수시) 실시

□2 **(평가대상)** 총 100개 과(팀)의 **총 203개 관리과제, 360개 성과지표**

□3 **(결 과)** 매우우수 10개(5%), 우수 30개(15%), 다소 우수 31개(15%), 보통 61개(30%), 다소 미흡 30개(15%), 미흡 31개(15%), 부진 10개(5%)

* 관리과제별 평가결과를 7개 등급으로 상대 등급화한 결과임

○ 360개 성과지표 中 323개 성과지표 목표치를 100% 달성하였으나, 47개 성과지표는 목표치를 일부 달성하지 못함(평균 달성률 98%)

* 성과 목표치 미달성은 국회 심의지연, 주택시장 등 국내 여건변화, 관계기관 협의지연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

2. 총리실 실태점검 결과

□1 **총리실 실태점검 결과 : 보통***

○ **(우수한 점) 국민만족도 조사**를 통해 **성과과제**에 대한 **환류** 및 **개선방안 모색, 성과지표 달성도**에 대한 **감사실 검증절차 추가**

* 41개 중앙행정기관 대상 점검 실시 :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등 4단계

○ **(보완할 점)** 성과평가 위원회를 구성시 **내부위원 1명 위촉 필요, 자체평가 결과**의 **적기 공개**(상임위 송부 등) **필요**

Ⅱ 2016년도 자체평가 개요

1. 2016년 자체평가 기본방향

기 본 방 향

◈ 신산업 분야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협업과제 발굴
◈ 주요 핵심과제 집중 관리
◈ 성과중심 평가를 위해 난이도 등급간 점수편차 조정
◈ CEO과제 및 협업과제에 대한 정책만족도 조사
◈ 성과평가위원회 구성 개편
◈ 평가결과 대국민 적기 공개

1 성과중심의 평가를 위해 난이도 등급내 점수 조정

○ '15년에는 성과지표 **달성도**를 원점수로 반영하여 과제간 **변별력**을 다소 제고하였으나, 여전히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 차지

- **난이도 등급간 점수 편차**를 최대 15점에서 **10점으로 하향 조정**

2 공동수행과제 평가시 난이도 등급을 차등화

○ **기존에는 모든 일정을** 그 내용이나, 중요도에 상관없이 **지연시**에는 **동일하게 감점**하여 핵심일정 관리에 한계

- 추진 일정별로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달리**하여, 일정 지연시 **중요도에 비례**하게 **감점**함으로써 평가의 합리성 제고

3 과제내용 중심의 난이도 평가

○ 과제의 유형보다는 **실질적인 과업내용**에 따라 **난이도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과제 **유형별 난이도 등급 배분 조정**

- 평가의 **관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난이도 **등급별 강제할당**을 적용

* 예시) S・A・B・C・D = 10 : 30 : 35 : 15 : 10

4 노력도 지표중 '계획이행의 충실성'을 원점수로 반영

○ 계획이행의 충실성이 대응성과 함께 **노력도 항목으로 표준화 평가**됨에 따라 **적극적 노력 여부**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불가

- 충실성 점수를 **원점수로 반영**하고, 평가지표 수준의 객관적인 관리를 위해 **자료출처를 명시**하고 **감사관실과 중복 검증**

5 협업과제에 대한 정책만족도 조사 추가

○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CEO과제**에 대해서는 **정책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평가에 반영(5점, 표준점수)

7 성과평가위원회 구성 개편

○ 소위별 평가위원의 활동실적(회의참여 횟수)이 저조한 **민간전문가 5명을 교체**하고, **내부위원 1명**을 CEO위원회에 **신규 추가 위촉**

6 평가결과 적기 공개

○ **투명하고, 공정한** 성과평가 운영을 위해 자체평가결과를 **적기***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국회 **상임위**에도 **보고**

* 국무조정실 '정부평가위원회' 심의결과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2. 수립 경과

□ **'16년도 성과관리 평가계획 초안 마련**('16.2.24~3.11)

□ **'16년도 성과관리 평가계획 초안 의견수렴**('16.3.17~3.25)

○ 본부 및 소속기관에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실시

□ **'16년도 성과관리 평가계획 초안 평가위원회 의견수렴**('16.3.25~4.8)

○ 내부 의견수렴을 마친 초안에 대한 평가위원회 의견수렴

□ **'16년도 자체평가 수립지침 시달**(3.30, 국무조정실)

□ **'16년도 성과관리 평가기준 관련 주무과장 회의**(3.31)

○ 실국 주무과장 및 지방청 국장급 단위의 평가기준 검토회의 개최

○ 실국의견을 감안하여 일부 내용 조정 및 보완

□ **성과관리 평가계획 수정**(4.8~4.12)

○ 국무조정실 수립지침에 따라서 평가기준 수정

□ **성과관리 평가기준 최종 의견수렴**(4.14~4.22) **및 보완**

○ 본부 및 소속기관 전 부서 최종 의견 수렴 실시

□ **'16년도 자체평가계획(안) 심의·확정**(4.27, 성과평가위원회)

○ 전체 성과평가위원이 참여하여 최종 확정(서면심의)

Ⅲ 성과평가위원회 및 평가지원팀 구성 · 운영

1. 성과평가위원회 구성

1 구성 배경

○ **우리부 성과관리과제**(총리실 관리과제+자체관리과제)의 추진실적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구성(8개 소위, 33명)

* '14년부터 기존의 자체평가위원회+CEO평가위원회+성과평가위원회를 **통합하여 성과평가위원회**로 운영

○ 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평가 수행**을 위해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2 성과평가위원회 구성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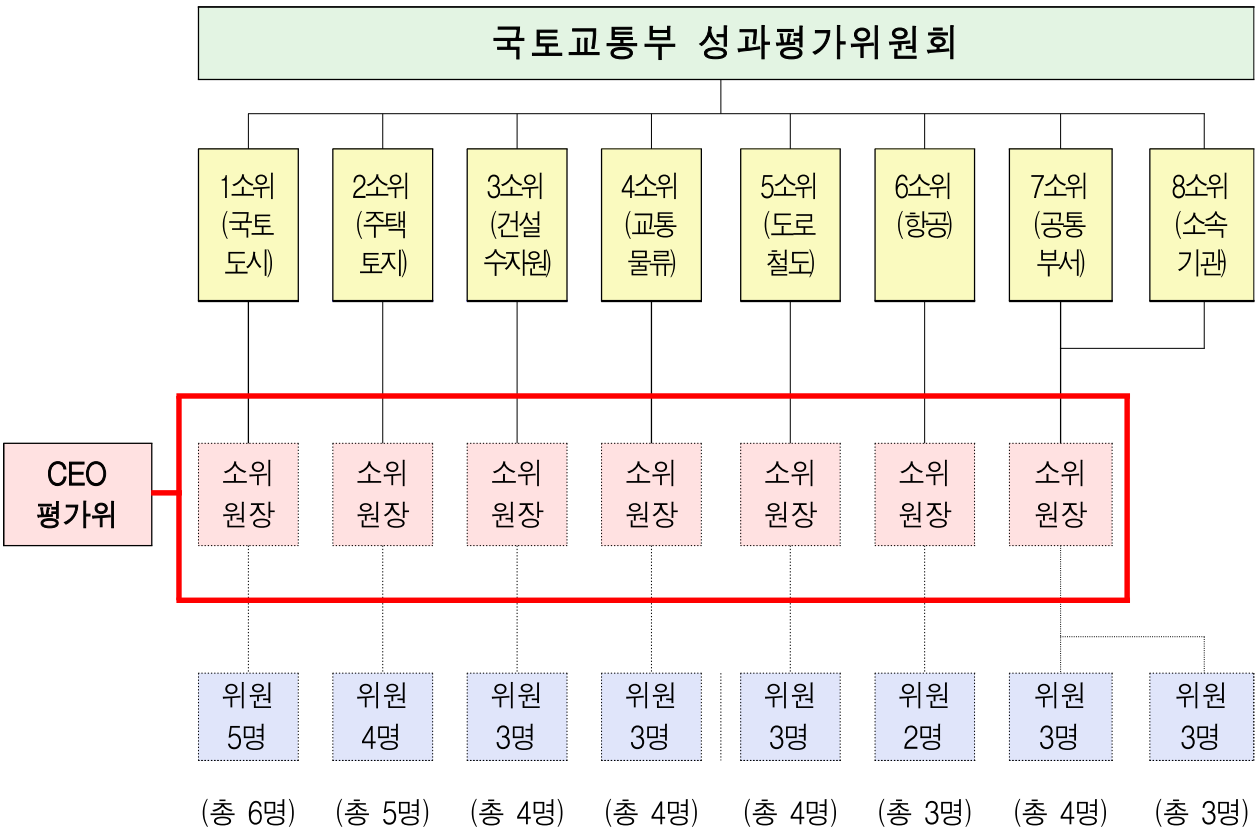

3 성과평가위원 현황

<주요정책(성과관리 시행계획) 부문>

○ 1~8소위

연번	성 명	소 속	직위	분야	소위	역 할
1	**허재완**	**중앙대 부동산학과**	**교수**	**국토**	1소위 (국토 도시)	**위원장, 1소위원장**
2	장철순	국토연구원	센터장	국토		
3	윤혜정	평택대 부동산개발학과	교수	도시		
4	이종광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실장	국토건설		
5	유영찬	건설기술연구원	연구본부장	건축		
6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	**주택**	2소위 (주택 토지)	**2소위원장**
7	김덕례	주택금융연구소	연구위원	주택토지		
8	김용순	LH 연구원	경영연구실장	주택토지		
9	정의철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토지		
10	사공호상	국토연구원	연구본부장	국토정보		
11	**김명수**	**카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건설**	3소위 (건설 수자원)	**3소위원장**
12	김민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	건설		
13	임윤묵	연세대 시스템공학부	교수	기술안전		
14	최성욱	연세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수자원		
15	**하헌구**	**인하대 아태물류학부**	**교수**	**물류**	4소위 (교통 물류)	**4소위원장**
16	이상민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교통		
17	김윤제	성균관대 기계공학부	교수	자동차		
18	서상범 *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물류		
19	**이 주**	**한양대 전기생체공학부**	**교수**	**철도**	5소위 (도로 철도)	**5소위원장**
20	김성민	경희대 공과대학	교수	도로		
21	양근율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부원장	철도		
22	정준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도로연구소장	도로		
23	**최기영**	**인하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항공**	6소위 (항공)	**6소위원장**
24	김연명	인하대 산업공학과	교수	항공		
25	최연철	한서대 항공학부	교수	항공		

연번	성 명	소 속	직위	분야	소위	역 할
26	**김갑성**	**연세대학교**	**교수**	**도시**	**7소위 (공통부서)**	**7소위원장**
27	구지희	건국대학교	교수	행정관리		
28	박동주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교통		
29	임성근	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행정관리		
26	**김갑성**	**연세대학교**	**교수**	**도시**	**8소위 (소속기관)**	**8소위원장 (겸임)**
27	구지희	건국대학교	교수	행정관리		7소위 겸임
28	박동주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교통		7소위 겸임
29	임성근	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행정관리		7소위 겸임
30	이동민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도로		
31	김원	건설기술연구원	해안연구실장	수자원		
32	조환기	청주대학교	교수	항공		

○ **CEO소위** (각 소위원장 7명과 내부위원 1명을 구성)

연번	성 명	소 속	직위	분야	역 할
1	**허재완**	**중앙대 부동산학과**	**교수**	**국토**	**위원장**
2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	주택	
3	김명수	카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건설	
4	하헌구	인하대 아태물류학부	교수	물류	
5	이 주	한양대 전기생체공학부	교수	철도	
6	최기영	인하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항공	
7	김갑성	연세대학교	교수	도시	
8	김흥진	국토교통부 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	

<행정관리역량 부문 : 7소위 겸임>

<재정사업 부문: 재정사업 자율평가위원회 별도 구성(주관: 투자심사담당관)>

<R&D사업 부문: R&D사업 자체평가위원회 별도 구성(주관: 미래전략담당관)>

3 분야별 전문가 비율

총계	분야별 전문가						내부위원
	교수	연구원	언론인	법조인	시민단체 및 기타	소계	
100%	57%	40%	-			97%	3%

2. 성과평가위원회 운영

1 위원회 운영기준

○ **(근거규정)** 국토교통부 자체평가위원회 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177호)

○ **(의사결정)** 위원회·소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2 위원회 기능

○ **(전체위원회)** 연도별 성과관리시행계획, 자체평가계획, 자체평가 대상과제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자체평가결과 심의·확정

○ **(CEO평가위원회)** CEO과제를 통합평가하고, 실국장, 과장과제 평가시 소위별로 **통일된 평가기준 마련**

-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시 CEO과제평가위에서 **최종 조정**

○ **(소위원회)**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전문분야별로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실국장과제, 과장과제를 평가

- 7소위에서는 공통부서 이외에 행정관리 역량을 평가

3. 평가지원팀의 구성 및 운영

1 평가지원팀의 구성

○ 전체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가지원 총괄팀 및 소위별 평가지원팀 구성

【 평가지원팀별 임무 및 역할 】

평가지원팀	역 할	팀원(직급)	연락처 (044-201-)
총괄팀 (기획담당관)	평가지원 총괄	【팀장】 김흥진(3)	3201
		【총괄】 천재민(5)	3203
		【지원】 박성채(7)	3208
지원 1팀	1소위 지원	【국토】 하창훈(4)	3647
		【도시】 임월시(4)	3707
		【건축】 조현환(4)	3761
		【공공기관】 김선명(5)	4459
		【용산공원】 이선영(5)	02-2131-2022
		【해안권】 안지애(5)	4549
지원 2팀	2소위 지원	【주택】 김민태(5)	3318
		【공주단】 하재범(5)	4505
		【토지】 최아름(5)	3399
		【국토정보】 이진우(5)	3460
지원 3팀	3소위 지원	【건설】 정수호(4)	3497
		【수자원】 임배석(5)	3592
		【기술안전】 이경호(5)	3550
지원 4팀	4소위 지원	【종합교통】 이성주(5)	3786
		【자동차】 손상현(5)	3836
		【물류】 서경숙(4)	3995
지원 5팀	5소위 지원	【도로】 오송천(5)	3876
		【철도】 김도곤(4)	3940
지원 6팀	6소위 지원	【항공】 오공명(4)	4181
		【항공안전】 민풍식(4)	4245
		【공항항행】 박해규(5)	4335
지원 7팀	7·8소위 지원	【총괄】 박정호(4)	3219
		【지원】 유문식(7)	3220
		【행정관리】 박성채(7)	3208
		【문서】 정용연(5)	3190
		【인사】 허경민(4)	3160
		【정보화】 이미숙(5)	3268

2 평가지원팀의 운영

○ **(총괄팀) 기획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소위별 지원팀 총괄

○ **(소위별 지원팀)** 소위별 **소관부서에서 운영**하되, 지원팀 이외의 과제소관 담당자도 필요시 자평위원 정책현장 방문 지원, 관련자료 제출, 과제 설명 등 평가 지원업무 수행

3 평가지원팀 역할

○ **(총괄팀)** 자체평가계획 작성, 실·국 추진실적 및 증빙자료 검토, 평가위원회 운영 및 평가지원 총괄 등 수행

* 위원회 개최 최소 7일전까지 추진실적, 증빙자료 등을 위원에게 송부하여 충분한 검토시간 부여

○ **(소위별 지원팀)** 소위원회 운영 지원, 주요정책현장 점검(6~12월 中) 및 정기적 정책자료 제공(분기별 1회 이상) 등 수행

* 소위별 지원팀에서 소위원회 위원들과 연락하여 연간 현장방문 일정을 기획담당관실에 제출하면 기획담당관실에서 검토 후 연간 일정 확정(~5월)

Ⅳ 자체평가 대상

1. 주요정책과제 및 자체과제 (주관: 기획담당관)

1 평가대상

① **총리실 관리과제** (성과관리 시행계획)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6	29	31	201	392

* 평가대상 과제 세부내용 첨부 (☞ 붙임 3)

② **소속기관 자체과제** (성과관리 시행계획 미포함)

○ 소속기관(BSC구축 단위 52개)의 성과관리과제 120개

2 평가제외 : 없음

○ 국토교통부 모든 부서(BSC구축단위)를 평가하여 평가제외 없음

2. 재정사업(일반재정, 정보화사업 포함) (주관: 투자심사담당관)

1 평가대상

○ **일반재정, 정보화사업** 중 '16년 평가대상사업

* 사업수행부처와 기재부(상위평가)간 협의를 통해 최종평가대상사업 결정

3. R&D사업 (주관: 미래전략담당관)

1 평가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16년 평가대상사업

* 미래부(상위평가)간 협의를 통해 최종평가대상사업 결정

4. 행정관리역량 (주관: 창조행정담당관)

1 평가대상

○ 인사관리, 조직관리, 정보화관리 등 3개 영역별 기관 내부 관리능력 및 생산성 향상 노력

*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창조행정담당관, 정보화통계담당관, 감사담당관

Ⅴ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

1. 주요정책과제

1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방법(측정기준)	배점 (100)		평가 시기
과제 난이도	○ 성과지표의 난이도	·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 · 이해관계자간 의견 대립정도 · 과제내용의 신규추진여부 (법 제정 등)	30		'16.5
과제이행 노력도	○ 계획이행의 충실성	· 계획의 기한내 완료여부	20	35	'17.1
	○ 행정여건·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 정책현장 의견수렴의 충실성 · 여건·상황변화에 대응정도 · 적극대응으로 문제해결 여부	15		
과제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달성도	· 성과관리시행계획에 제시된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도	20	35	
	○ 정책효과 발생정도 (CEO 및 협업과제는 10점)	· 계획수립시 예상한 정책효과 발생여부 · 성과에 대한 여론 반응정도	15 (10)		
	○ 정책만족도 (CEO 및 협업과제)	· CEO 및 협업과제에 대한 대국민 정책 만족도 및 인지도 정도	(5)		

2 가감점 평가항목 및 배점

<가점 기준>

평가항목	가점 항목
정책우수과제 (최대 2점)	○ 연말 장관님 평가에서 우수과제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 가점적용(최대 2점)
핵심관리과제 (최대 2점)	○ 장관님이 선정하신 우리부 핵심관리과제 중 혁신적 지표를 설정하여 달성하는 경우 가점적용(최대 2점) - 혁신적이고 도전적 지표 설정시 최대 1점, 달성시 최대 1점 부여

<감점 기준>

평가항목	감점 항목
국정과제 등 반영 및 이행 정도 (최대 -1점)	○ 국정과제 및 업무계획에 포함된 내용이 시행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과의 관련 과제에 감점(최대 -1점) - 계획 미반영(-0.5점), 계획반영・목표치 하향 조치(-0.5점)

3 '15년 대비 평가지표 변경사항

【평가지표 조정】

2015년				2016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100)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100)	
과제 난이도	○ 성과지표의 난이도	30		과제 난이도	○ 성과지표의 난이도	30	
과제이행 노력도	○계획이행의 충실성	20	35	과제이행 노력도	○계획이행의 충실성	20	35
	○행정여건・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15			○행정여건・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15	
과제목표 달성도	○성과지표의 달성도	20	35	과제목표 달성도	○성과지표의 달성도	20	35
	○정책효과 발생정도 (CEO과제 10점)	15 (10)			○정책효과 발생정도 (CEO 및 협업과제 10점) ※ 협업과제 추가	15 (10)	
	○정책만족도(CEO과제)	(5)			○정책만족도 (CEO 및 협업과제) ※ 협업과제 추가	(5)	
가감점	○국정과제, 업무계획 등 반영정도	최대 -2		가감점	○국정과제, 업무계획 등 반영정도	최대 -1	
	○정책우수과제	최대 +2			○정책우수과제	최대 +2	
					○핵심관리과제	최대 +2	

2. 재정사업 / R&D사업 / 행정관리 역량

□ '16년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 및 세부매뉴얼에서 제시한 평가지표, 배점, 세부측정기준 및 방법을 반영하여 시행

Ⅵ 자체평가 방법 및 일정

1. 자체평가 방법

1 평가 원칙

○ **CEO 및 협업과제는** 과제전체를 대상으로 **CEO 평가위**에서 평가하고, 非CEO과제(실국장, 과장, 자체과제)는 소위별로 평가

○ **난이도, 계획이행의 충실성, 성과지표 달성도 점수**는 **원점수**를 반영하고, 그 외 항목은 **표준점수**로 전환하여 반영

- 노력도의 경우 '15년에는 **표준점수**로 반영하였으나, 금년에는 계획이행의 충실성은 원점수로 반영하여, **과제이행 노력도** 비중을 높임

- 표준점수 전환시 **CEO**는 **CEO과제별**로, **非CEO과제**는 소위간 편차 조정을 위해 **소위별**로 각각의 평균점수 및 편차를 이용하여 산정

- CEO 및 협업과제 및 각 소위별 평균점수 편차는 별도로 보정하지 않음(다만, 난이도평가는 소위별 과도한 편차가 나지 않도록 CEO위원회에서 사전에 등급 배분)

▪ CEO과제 점수 = CEO과제 평균 + 조정계수 × $\frac{\text{과제점수} - \textit{CEO}\text{과제평균}}{\textit{CEO}\text{과제표준편차}}$

▪ 비CEO과제 점수 = 비CEO과제 평균 + 조정계수 × $\frac{\text{과제점수} - \text{소위별평균}}{\text{소위별표준편차}}$

* 과제별 표준화한 Z값은 최대 ±3으로 조정

○ 과제별 지표는 2~4개 이내로 설정(공동수행과제는 부서별 지표 1개씩)

- 평가항목(난이도, 노력도, 달성도)은 **과제 단위로** 평가

- 공동수행 과제의 경우 난이도, 노력도, 성과지표 달성도는 **부서별로 평가**하되, **정책효과** 및 **정책만족도**는 **과제별 평가**

2 난이도 평가 (원점수 반영) ☞ 세부평가기준 별첨

○ **(평가개요)** 5개 항목(목표치 적극적 설정정도, 과제내용과 성과지표 연계정도, 상위계획과 연계정도, 이해관계자 의견대립정도, 신규과제 여부)을 기준으로 총 5단계(S~D)로 구분하여 점수부여

○ **(등급비중)** 전체과제에 대해 5단계 등급을 일정비율(S:A:B:C:D=10:24:33:28:5)로 강제 할당하되, CEO과제, 협업과제, 실국장과제, 과장과제, 자체과제 順으로 등급별 할당비율을 차등 적용

- 과제의 등급보다는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평가받을 수 있도록 **과장과제, 자체과제**의 경우에도 **일정부분 S등급**을 배분

- **평가의 변별력**을 높이고, **난이도 비중**을 낮추기 위해 CEO과제는 C등급, 실국장 과제는 D 등급까지 확대하고, **등급간 최대 점수 편차**를 **10점으로 조정**('15년은 15점)

- **공동수행** 과제는 **부서별 성과지표**에 대해 **각각** 난이도 평가를 실시하여 난이도 점수를 산정하되, **부서간 등급**을 **차등화**

○ **(소위별 배분)** CEO과제는 소위별 비율을 고려치 않고 배분하고 자체과제를 평가하는 8소위는 자체과제 비율대로 배분

- 1~7소위는 소위별로 실국장 및 과장과제에 대해서 배분된 비율대로 난이도 부여

- 각 소위별로 실국장 및 과장과제의 **각 10% 범위내에서 등급조정** 가능 (예: 1소위 실국장 과제수가 20개, 과장과제가 20개일 경우 각 2개의 과제에 대해 등급 상향 또는 하향 조정가능)

○ **(평가절차)** 연 1회 평가('16.5)

- (1단계) CEO위원 회의를 통해 CEO과제에 대해서만 난이도 평가

- (2단계) 소위원회별로 실국장 및 과장과제에 대한 난이도 평가

- (3단계) 과제별 평가등급에 대해서 과단위로 통보해주고 이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 과단위로 취합(1주일 기한)

- (4단계) CEO과제 위원회를 개최, 최종적으로 전체 난이도 조정

3 **노력도 평가** (충실성→원점수, 대응성→ 표준점수 반영) ☞ 세부평가기준 별첨

○ **(평가개요) 계획이행 충실성**(20점, 총 5단계) 및 행정여건 변화 등에 대한 **대응성**(15점, 총 3단계)으로 평가하고 등급별 강제할당 없음

- 계획이행 충실성은 **분기별로 점검**하되, **일정별 가중치를 부여**하여 일정 지연시 가중치에 따라 감점

- 외생적 요인에 의해 불가피하게 과제 적기 추진이나 과제 달성이 곤란한 경우 예외 인정

- 대응성 평가시 **현장의견 수렴의 충실성** 여부도 평가

○ **(평가방식)** 상반기는 **추진실적 점검('16.7월)**을 통해 성과 창출을 독려하되, **노력도 평가**는 달성도 평가와 함께 **'17.1월**에 1회만 실시

- (1단계) CEO과제 위원회를 개최하여, CEO과제에 대해서 우선 평가하고 이를 소위별 노력도 평가시 기준점으로 활용

- (2단계) 소위별로 실국장 및 과장과제 평가

- (3단계) 평가결과를 과단위로 통보 후 이의신청 접수

- (4단계) 이의 신청에 대해 CEO 위원회를 개최하여 노력도 조정

- (5단계) CEO과제 및 1~7 소위별 점수에 대해 표준점수로 전환

4 달성도 평가 (지표달성도→원점수, 정책효과→표준점수 반영)

○ **(평가개요)** 성과지표 달성도(20점, 총 6단계), 정책효과 달성도(15점, 3단계)로 평가, 등급별 강제할당 없음

- 정책효과 달성도는 정책효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책효과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경우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 부여

* 예시) 같은 '우수'등급이라도 정책효과 발생시 15점, 미발생은 13점 부여

- 홍보효과는 별도 지표로 평가하지 않고, 정책효과에 포함하여 평가

* 언론동향자료, 홍보평가자료, 보도자료 인용률, 주요 일간지 보도횟수 등 활용

○ **(평가방식)** 노력도 평가방식과 동일하게 '17.1월 평가

5 최종점수 산출

○ 과제별 최종 점수 (BSC 고유업무 점수에 100% 반영)
= 난이도(원점수) + 노력도(원점수, 표준점수) + 달성도(원점수, 표준점수) + 가감점(원점수)

○ 최종 점수에 따라 과제별 전체 순위를 산출하고 총 7개 등급화
(국무조정실 지침에 의한 등급구분이며, 부서별 BSC점수와는 무관)

순위 누적(%)	등급	예시 : 관리과제 300개
~상위 5% 이내	1등급(매우 우수)	1위~15위
5%초과~20%이내	2등급(우수)	16위~60위
20%초과~35%이내	3등급(다소 우수)	61위~105위
35%초과~65%이내	4등급(보통)	106위~195위
65%초과~80%이내	5등급(다소 미흡)	196위~240위
80%초과~95%이내	6등급(미흡)	241위~285위
95%초과~	7등급(부진)	286위~300위

○ '17.1월 성과평가위 전체회의에서 과제별 평가결과를 최종 확정

2. 자체평가 일정

1 성과관리 시행계획 내부 확정

○ 성과관리 시행계획 초안에 대한 평가위원회 사전검토 실시(3.18~4.1)

○ 실국 주무과장 회의(3.31, 소속기관 및 지방청 포함)를 통해 성과관리 세부운영 방안 및 시행계획 의견 수렴

○ 실국에서 작성한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대한 검토회의(4.7~4.9)

* 성과지표, 추진일정 적정성에 대해 성과담당 직원 및 기획담당관실 직원면담

2 제1차 성과평가위원회 개최(4.27)

○ '16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및 '16년 자체평가계획 검토 및 확정

3 제2차 성과평가위원회 개최(5월)

○ 난이도 평가

* CEO과제 CEO과제평가위원회, 비CEO과제는 각 소위별 평가 실시

4 상반기 추진실적 점검(7월)

5 지연과제에 대한 내부점검회의(11월)

6 제3차 성과평가위원회 개최('17.1월)

○ 노력도 및 달성도 평가

○ '16년 성과평가 최종결과 확정('16년 BSC 부서별 '고유업무' 점수 확정)

7 '16년 성과평가결과 보고서 총리실 제출('17.2월)

Ⅶ 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

1 기본원칙

○ 평가 결과는 정책, 예산, 조직, 인사 등에 반영하는 등 성과관리를 통해 평가의 실효성 제고

○ 평가 결과를 공개하여 매우 우수 과제는 적극 홍보, 미흡·부진 과제는 제도 개선을 통해 성과 향상 도모

2 평가결과의 정책, 예산, 조직 등에의 활용계획

○ 관리과제에 대한 평가항목별 최종 평가결과를 소관부서에 통보하여 차기 정책 추진시 반영토록 조치

- 미흡·부진 과제는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차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 수립 등에 활용

○ 자체평가 결과를 예산, 조직담당 부서에 통보하여 관련사업 예산 편성, 조직 재설계, 인력 운영방안과 연계 유도

3 평가결과의 개인성과(인사, 포상, 성과급 등) 활용 계획

○ 평가결과를 BSC 시스템을 통해 인사, 개인성과급 등에 반영

- 각 부서의 관리과제(성과지표)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를 성과관리(BSC)와 연계하여 **개인 성과급 지급에 반영 중**

* 자체평가 결과 매우 우수·부진과제를 BSC 정성평가 자료로 활용하도록 담당부서에 통보

- 성과관리(BSC) 우수자는 근무성적평정 시 인사고과에 반영토록 담당부서에 통보

4 평가결과 공유·확산 방안

○ 각 부서별 관리과제(성과지표) 중 매우 우수·부진과제를 중심으로 평가결과를 간부급(국장 이상)에 보고(메모보고)

- 특히, 평가결과 매우 우수 관리과제와 지표의 적극적 설정 정도, 정책 효과 등에서 우수등급을 받은 관리과제를 모범사례로 전파

5 평가결과 대국민 공개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성과관리시행계획 및 평가결과**를 **대국민에게 공개**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 도모

Ⅷ 기타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1 협조사항

○ 평가지원팀과 관리과제 담당부서는 자체평가(난이도, 상반기, 하반기) 및 추진실적 점검(3분기 등) 시 자료제출, 과제설명 등 적극 협조

○ 자체평가(상반기, 최종) 기간 중 전자통합평가시스템(e-ipses)에 추진실적, 증빙자료 등 평가자료 적기 입력 및 제출

○ 평가위원의 전자통합평가시스템(e-ipses) 사용법 교육 적극 참여

* 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정책 추진실적 점검이 가능(평가 실효성 제고)

* 전자통합평가시스템(e-ipses) 웹 주소: https://www.eipses.go.kr
(외부 접속시 http 뒤에 s를 꼭 입력)

【붙임 1】

주요정책과제 평가지표

붙임 1 주요정책과제 평가지표

(1) 과제난이도

평가지표	1. 과제 난이도(30점)
측정방법	○ **과제의 난이도에 따라 5단계로 구분하여 점수 부여** ① 매우 높음(S) (30～28점) ② 높음(A) (27～25점) ③ 보통(B) (24～23점) ④ 낮음(C) (22～21점) ⑤ 매우 낮음(D) (20점) ○ **과제의 난이도는 아래 5항목에 기초하여 판단** ·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지표성격 등 고려) · 과제내용과 성과지표와의 연계정도 · 상위계획(국정과제, 대통령 지시사항, 업무보고 등) 연계정도 · 이해관계자간 의견 대립정도 · 과제내용의 신규추진여부(법 제정 등)
측정기준	○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정도** : 최근 실적치가 있는 경우, 신규 사업인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정량·정성적으로 판단

난이도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 낮음
적극성	획기적 정책개선, 추세보다 30%이상 목표 상향	어려운 정책개선, 추세보다 10%이상 목표 상향	일반적 정책개선, 추세보다 목표상향	단순개선, 추세 수준 목표설정	단순집행, 추세보다 낮은 목표설정

* 지표의 성격이 결과지표가 아니라 투입·과정·산출지표인 경우에는 기준 등급보다 하향조정할 수 있음 (구체적 측정방법은 【참고 1】)

평가지표	1. 과제 난이도(30점)

○ **과제내용과 성과지표간 연계정도** : 성과지표가 과제내용을 포괄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난이도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 낮음
과제내용 반영여부	100% 반영	80%이상 반영	60%이상 반영	40%이상 반영	40%미만 반영

○ **상위정책과의 연계정도** : 과제내용이 상위정책(국정과제, 지시사항, 업무보고 등)을 반영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난이도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 낮음
상위정책 연계정도	100% 연계	80%이상 연계	60%이상 연계	40%이상 연계	40%미만 연계

○ **이해관계자 의견대립정도** : 과제내용과 관련된 이해관계자간 의견대립으로 인한 정책추진의 어려움 정도 판단

난이도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 낮음
대립정도	의견대립 매우심함	의견대립 심함	의견대립 존재	대립없음	-

○ **과제내용 신규추진여부** : 이해관계자 의견대립정도, 적극적인 목표치 설정정도 등 타 난이도 평가기준에 따라 성과평가위원회에서 정성·정량적으로 판단

평가근거/자료	○ 최근 3년간 목표치 현황 자료, 신규지표인 경우 유사지표의 목표치 현황 자료 등

(2) 과제이행 노력도

평가지표	2-1. 계획 이행의 충실성(20점)
측정방법	○ **추진계획 중 지연된 일정별 가중치에 따라 점수 부여** - 추진일정의 충실성 = $\frac{100-\sum \text{분기별지연률}}{100}\times 10+10$
측정기준	○ **완료 기준** - 추진계획과 대비하여 해야 할 사항을 모두 적기에 완료 ○ **지연 여부 판단기준** - 과제의 전체 일정을 100%로 보고 개별 일정에 가중치(%) 부여 - 월별 추진일정을 기준으로 과제 추진상 지연여부를 판단하되, 동일 일정의 지연은 분기별로 1회만 산정 * 하나의 일정이 분기내 2개월 이상 지연되어도 1회만 산정하고, 달성시까지 분기별 지연 산정(구체적 측정사례는 【참고 2】 참조) ○ **미완료 및 지연 예외 기준** - 사유가 전적으로 외생적 요인에 의한 경우로서, 그 사유의 영향력, 추진 부서의 노력도, 귀책 사유 등을 고려할 때에 부서 자체적으로 과제추진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외생변수 예시** - 국제적 환경(국제적 규제, 교역시장, 원자재 가격, 대북관계 포함) 변화에 의해 지연된 경우 - 상급 기관 등에 의한 추진방식 변경 등 - 추진부처의 귀책사유가 없는 법률안·예산안 통과 지연 등으로 인해 후속일정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평가근거/자료	○ 각 사업별 추진계획 대비 최종실적 ○ 실적에 대한 근거자료 등

평가지표	2-2. 행정여건・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15점)
측정방법	○ **현장의견 수렴 등을 통해 파악된 행정여건・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였는지 여부를 판단** ○ **배점기준** : ⓐ 정책 현장의 충실한 의견수렴, ⓑ 여건・상황 변화 대처의 적시성, ⓒ 대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경우 ① 우수(15~13점) : ⓐ, ⓑ, ⓒ를 모두 충족 ② 보통(12~10점) : ⓐ, ⓑ, ⓒ를 두 개 이상 충족 ③ 미흡(9~7점) : ⓐ, ⓑ, ⓒ 중 하나 이하 충족
측정기준	○ **'충족' 판단 기준** ⓐ 정책 현장의 의견을 충실하게 수렴하였는지 여부 - 정책의 수립 전, 집행과정, 사후평가 등의 단계에서 의겸수렴 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판단 * 의견수렴은 정책에 대한 현장보고서, 만족도 조사, 여론조사 뿐만 아니라 간담회, 공청회, 설명회, 국회 및 언론의 지적사항 대응(보도참고, 해명자료 배포) 등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포함 ⓑ 여건・상황 변화에 적기에 대처하였는지 여부 판단 - 정책추진시 현안사항에 대해 BH, 당, 관련부처 등 관계기관과 수시로 의견조율을 통해 적기에 대응하였는지 여부 판단 * 상황변화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현장의견수렴 여부만 판단하여 보통 부여 ⓒ 여건・상황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문제점을 해결하였는지 여부 판단 - 상황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문서로 수립・시행하고 발생한 문제점 등을 해결한 경우만 인정
평가근거/자료	○ 현장의견 수렴 결과 및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실적 자료

(3) 과제목표 달성도

평가지표	3-1. 성과지표 달성도(20점)

측정방법

○ **성과지표의 달성여부를 확인하여 달성률에 따라 점수부여**

달성률	100% 이상	100%미만~80% 이상	80% 미만
점수	20	20 × 달성률	16

* 성과지표가 다수인 경우 가중평균값으로 달성률 산정

측정기준

○ **평가대상 과제별로 당초 설정한 목표대비 실제 달성한 정도를 백분율(%)로 산출**

- 성과지표가 법률 제·개정인 경우
  - 정부입법 : 제·개정(100%), 상임위 통과(95%), 국회제출(90%), 법제처 심사(80%), 규제심사(70%), 방침결정(60%)
  - 의원입법 : 제·개정(100%), 상임위 통과(90%), 국회제출(80%)
- 성과지표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인 경우 : 제·개정(100%), 법제처 심사(90%), 규제심사(80%), 방침결정(70%)
- 성과지표가 행정규칙 개정인 경우 : 개정완료(100%), 규제심사 완료(확인증, 90%), 최초방침(80%)
- 성과지표가 방안마련(방침결정 이후 추가 절차 필요시)인 경우 : 방안마련(100%), 방침결정(80%)

○ **1개의 평가대상과제에 대해 성과지표가 다수인 경우**

- 성과지표 각각에 대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달성비율 산정
- 관리과제의 성과지표가 다수인 경우 그 중 1개의 성과지표가 100% 이상 달성된 경우에도 100%만 달성한 것으로 계산

예) 관리과제A(성과지표 a,b) : 성과지표간 가중치가 각각 50%일 때,
성과지표 a를 150%달성하고 성과지표 b를 50%달성한 경우
⇒ 관리과제 A의 목표달성도 = 75%(100%×1/2+50%×1/2)

평가근거/자료

○ 목표달성도 측정방법 및 측정결과 근거 등

평가지표	3-2. 정책효과 발생정도 (15점, CEO 및 협업과제는 10점)
측정방법	○ 계획수립시 예상한 정책효과 발생 여부(15점)에 따라 평가 - 단, CEO 및 협업과제는 정책효과 발생정도를 10점 만점으로 평가 ① 계획수립시 예상한 정책효과가 모두 나타난 경우(우수) : 15~13점 ② 예상한 정책효과가 부분적으로 나타난 경우(보통) : 12~10점 ③ 예상한 정책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미흡) : 9~7점 * CEO 및 협업과제 : 우수(10~9점)→ 보통(7~8점)→미흡(6~5점) ○ 정책효과 판단시 해당정책의 홍보가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홍보실적을 감안하여 평가할 수 있음 - 해당정책에 대한 홍보효과가 매우 우수한 경우에는 정책효과가 보통인 경우에도 우수점수 부여 가능 - 해당정책에 대한 홍보효과가 매우 미흡한 경우에는 정책효과가 우수한 경우에도 보통점수 부여 가능
측정기준	○ 계획수립시 예상한 정책효과 발생 여부를 정량적 방법과 정성적 방법으로 평가 ○ 신규사업 등 정책영향이 발생할 단계가 아닌 경우에는 “획기적인 제도 개선 내용을 포함하거나”, “다수의 이해관계자간 갈등 조정 등을 통해 기본계획 등을 수립”한 경우로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인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 우수점수 부여 - 다만, 그 외의 경우에는 보통점수 부여 * 구체적 측정방법은 【참고 3】 참조 ○ 홍보효과가 중요한 경우 : 새롭게 추진하는 정책으로 이해관계 대립이 높은 경우, 기존에 부정적 여론이 강했던 정책, 대규모 국제행사 준비 등 대국민 홍보가 중요한 정책 등
평가근거	○ 관련 과제에 대한 언론 보도 증빙자료(스크랩 자료)

평가지표	3-3. 정책만족도(5점) ※ CEO 및 협업과제만 해당

측정방법

○ CEO 및 혀법과제별 정책수요자에 대한 정책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하여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

대 상	점 수
만족도 점수 1등 과제	5
만족도 점수 2등 이하 과제	$5 \times \frac{\text{2등이하과제별점수}}{\text{1등과제점수}}$

측정기준

○ CEO 및 협업과제에 대해서 일반국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여 정책 만족도조사 실시

- 정책별 종합만족도 : 일반국민만족도×0.7+전문가만족도×0.3

* 설문주체별 종합만족도는 항목만족도와 체감만족도의 가중평균으로 도출

** 항목만족도: (공통) 적정성, 효과성 (전문가 추가검토) 민주성, 대응성

평가근거	○ CEO 및 협업과제에 대한 정책만족도 조사 결과

【참고 1】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정도 판단기준 예시》

1 최근 실적치를 활용하여 평가가 가능한 경우

① 최근 3년간 실적치가 있는 경우

- 최근 3년간 실적치가 상승세인 경우

▪ 추세치 수준을 그대로 반영한 경우 : 중

예시) 교육산업의 경쟁력 강화(외국인 학생 유치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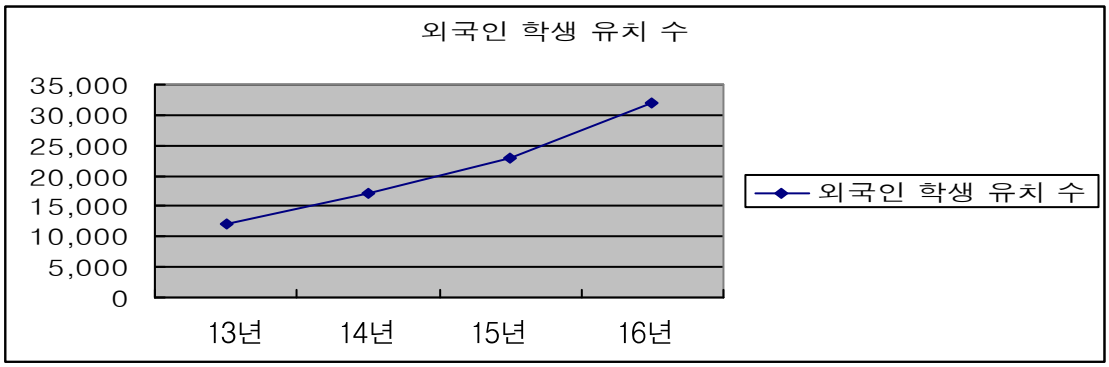

* 추세치 : 2년간 평균 증가율(예: '11~'12년 5%상승, '12~'13년 7%상승한 경우 평균 증가율인 6%가 전체 추세치임)

* 실적 기준이 만족도 등과 같이 상승 한계치가 존재하는 항목일 경우 이를 고려하여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 판단

- 최근 3년간 실적치가 하향 추세인 경우

▪ 최근 3년간 실적치의 평균값 수준으로 설정한 경우 : 중

예시) 개발기술 사업화 촉진(R&D 연계지원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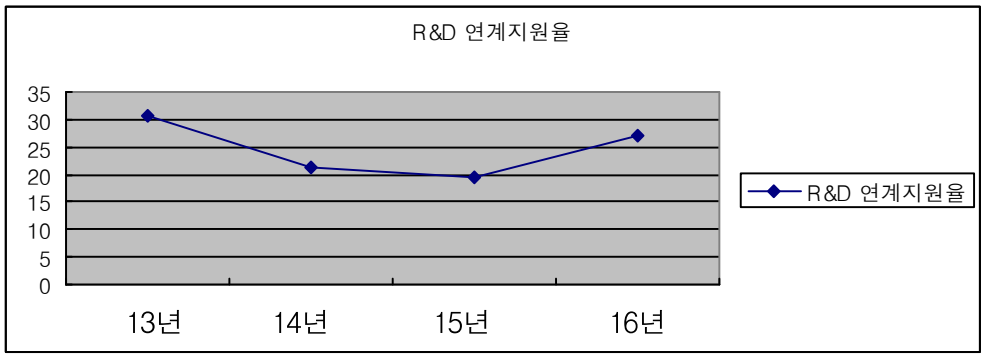

- 최근 3년간 실적치가 등락하는 경우

▪ 상승국면의 추세치 수준에 따라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 : 중

예시) 글로벌 경쟁력 강화(수출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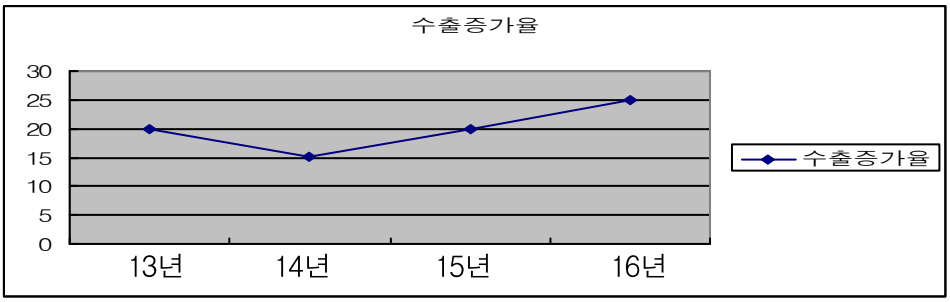

▪ 상승 후 하강국면일 경우엔 3년간 평균치 수준으로 설정한 경우 : 중

② **목표치가 2년간만 있는 경우 상승국면일 땐 상승세 반영 시 : 중** 하향 추세 일 땐 가장 높은 목표치(실적치) 수준으로 설정한 경우 : 중

③ **목표치가 전년도 실적만 있는 경우 상승률이 전년대비 10%이상 높게 설정한 경우** :중(예:5%→5.5%(상승률 10%), 50%→55%(상승률 10%))

2 신규사업 등 최근 실적치('12년, '13년)가 없는 경우

○ 업무수행 및 목표치 달성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정성·정량적으로 판단

* 국·내외 관련분야나 인접분야의 통계자료 추세치 등이 있는 경우 이를 판단자료로 활용

3 성과지표가 법률 제·개정인 경우

○ 이해관계자가 다수이거나 비용부담자가 명백하여 반대가 심한 사안 등 법률 제·개정의 난이도가 높은 경우에 목표치를 적극적 설정한 것으로 인정

* 법률 국회 제출을 성과지표로 제시한 경우 불인정, 다만 다수의 이해관계자 의견 조율 등 난이도가 높고 '14년도에 처음으로 추진한 법률 제정 사업일 경우 인정여부 검토

4 국제평가지수를 활용하여 성과지표를 설정한 경우

○ 국제평가지수를 활용하여 국제적 수준의 목표치를 설정하였다면 목표치를 적극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인정

【참고 2】

《분기별 지연률 산정 사례》

분기	일정	월	가중치	달성여부
1분기	A법 입법예고	1월	10%	달성
	B법 방침	2월	10%	달성
	C사업 착수	3월	5%	지연달성(7.10) - 지연2회
2분기	A법 법제처 심사	4월	15%	지연달성(7.20) - 지연1회
	B법 입법예고	5월	10%	달성
	B법 법제처 심사	6월	10%	달성
3분기	A법 국회제출	7월	5%	지연달성(8.20) - 1회지연
	B법 국회제출	8월	5%	달성
4분기	A법 국회개정	10월	20%	달성
	C사업 준공	11월	10%	달성

○ 연 1회 분기별 지연률 합산하여 산정
(지연과제는 달성시까지 분기별 중복 감점)

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목표진도율	25%	60%	70%	100%
분기별지연률	5% (C사업 착수)	20% (C사업 착수, A법 법제처심사)	5% (A법 국회제출)	0%
추진일정 충실성 점수	17 = $\frac{100-30}{100}\times 10+10$			

【참고 3】

《정책영향 측정방법》

1 정책영향이 발생한 경우

① 정책영향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경우

○ 정책영향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 자료가 있는 경우

등 급	내 용
우수	○ **사업 실적이 전년 대비 상승한 경우** * 실적 상승률은 달성한 실적의 추세치를 고려하여 【참고 1】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여부"의 측정방법에 준해서 판단 ○ **사업실적이 추세치를 반영할 정도는 아니나 소폭 상승하고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① 획기적인 제도개선, ② 다수의 이해관계자간 갈등 문제 해결 ③ "①②"에 준하는 사업성과를 거둔 경우 예시) 과제명 : 노사관계 제도·관행 선진화 ⇒ 노·사간 조정 성립율 : 전년대비 3.5% 증가('14년 53.3%→'15년 56.8%)
보통	○ **실적이 전년과 유사한 경우** ○ **실적이 전년대비 하락하였으나, 상기 "①②③"에 해당하는 경우**
미흡	○ **전년대비 실적이 하락한 경우**

○ 성과지표가 결과지표인 경우

등 급	내 용
우수	○ **성과지표 목표치를 적극적으로 설정하여 100%달성한 경우**
보통	○ **성과지표 목표치를 90%이상 달성하였고 목표치도 적극적으로 설정한 경우** ○ **성과지표 목표치를 100%달성하였으나 목표치를 적극적으로 설정하지 않은 경우**
미흡	○ **성과지표 목표치를 90%미만 달성한 경우**

② 정책영향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경우

○ 정책수혜자 만족도 조사 및 전문가 설문 조사 실시

- 만족도 및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경우 설문조사 절차 및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인정되면 만족도 점수에 따라 정책영향 판단

* 성과지표가 만족도 조사 결과가 아니고, 정책영향을 계량화 할 수 없는 사업에 대해 부처가 만족도나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정책영향 측정 방법으로 인정

- 다만 이 경우도 만족도 조사 계획을 자체평가(12월 이전)전에 수립할 필요

등 급	내 용
우수	○ 만족도 점수가 전년대비 10% 이상 상승한 경우
보통	○ 만족도 점수가 전년대비 상승한 경우
미흡	○ 만족도 점수가 전년대비 하락한 경우

○ 정성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등 급	내 용
우수	○ 당초 수립한 사업계획의 목적 및 성과관리시행계획상의 기대효과가 모두 나타난 경우
보통	○ 당초 수립한 사업계획의 목적 및 성과관리시행계획의 기대효과가 부분적으로 나타난 경우
미흡	○ 당초 수립한 사업계획상의 목적 및 성과관리시행 계획의 기대효과가 나타나지 않거나 정책의 부정적 효과가 나타난 경우

2 정책영향이 발생할 단계가 아닌 경우

○ ① 획기적인 제도개선 내용을 포함, ② 다수의 이해관계자간 갈등조정 등을 통해 기본계획 등을 수립, ③ 외부(국민, 언론, 국회 등)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은 경우 등 특별한 노력을 기울인 점이 인정되면 우수점수를 부여

- 그 외는 보통점수를 부여

예시) 과제명 : 과학기술 기본계획 수립, 일과 가정 양립지원 확충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장애인 고용촉진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등

【참고 4】

《공동수행과제 과제관리 및 평가방안》

1 평가의 전제

○ **(부서별 지표 설정)** 공동수행 부서별로 해당부서에서 추진하는 사항만을 지표를 설정하여 지표별 비중과 함께 제출

○ **(전체과제 점수)** 지표별 점수를 사전에 제출받은 부서별 비중에 따라서 가중평균하여 산출

2 평가방법

○ **(평가원칙)** 부서별 성과지표별로 평가하되, 평가항목 중 부서별 평가가 어려운 경우(정책효과, 만족도 등)에는 동일 점수 부여

- 단, 부서별로 평가하는 항목인 경우라도, 과제를 총괄하는 부서의 경우에는 전반적인 노력*을 감안하여 평가할 필요

* 총괄부서는 명시적 지표 이외에도 과제를 총괄하여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책수립, 국회대응, 관계부처협의, 언론 대응**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

<평가항목별 평가방법 요약>

평가항목		공동수행시 부서별 평가방법
난이도(원점수, 30)		부서별 성과지표에 따라서 평가하되, 총괄-협조부서간 기여도 감안
노력도	추진일정 충실성 (표준점수, 20)	부서별 성과지표에 따라서 평가하되, 총괄-협조부서간 기여도 감안
	여건변화 대응성 (표준점수, 15)	
달성도	성과지표 달성정도 (원점수, 20)	부서별 성과지표에 따라서 평가하되, 총괄-협조부서간 기여도 감안
	정책효과 발생정도 (표준점수, 15 or 10)	모든 부서 동일 점수 부여
	정책만족도 (표준점수, 0 or 5)	
가점		기여도에 따라 가점 분할
감점		부서별 평가

○ **(난이도 평가)** 부서별 성과지표만을 고려하여 부서별로 난이도를 평가하되, 과제를 총괄하는 부서는 전반적인 노력을 감안

○ **(노력도 평가)** 부서별 추진계획 및 성과지표만을 고려하여 노력도를 평가하되, 과제를 총괄하는 부서는 전반적인 노력을 감안

○ **(달성도 평가)** 성과지표 달성도는 노력도와 유사하게 평가

- 정책효과 발생정도 및 정책만족도는 지표별로 분리하여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동일 점수를 부여

○ **(가점)** 해당과제가 가점을 받은 경우에는 지표별 비중에 따라서 지표별 가점을 산정

<부서별 가점 산정 예시>

평가부서	비중	과제 가점	부서별가점
주택정책과	0.4	3점	1.2
주택기금과	0.3		0.9
주거복지기획과	0.3		0.9

○ **(감점)** 해당과제가 일부 내용 누락이나 목표치 하향 설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내용과 관련된 지표(부서) 점수만 감점

○ **(표준화)** 지표별 표준점수는 해당 지표가 속한 과제의 등급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라짐

- 소위별 평균 및 표준편차는 공통수행 과제의 각 지표를 하나의 과제로 간주하여 산정

<지표별 표준점수 산정방식>

평가부서	표준점수
CEO과제 세부지표	CEO평균 + $\frac{x(\text{표준화대상원점수}) - \mu(CEO\text{평균})}{\sigma(CEO\text{표준편차})}$
실국장·과장과제 세부지표	비CEO평균 + $\frac{x(\text{표준화대상원점수}) - \mu(\text{해당과제 소위평균})}{\sigma(\text{해당과제 소위표준편차})}$